



산별노조·지역지부·단위조직 **선거사무안내서**

# 선거일기간

## 선거사무개요\_전자투표



각 전자투표 시 선거인 인증 방법의 세부사항, 투표 문항 세부사항, 투표완료 절차 세부사항, 서버 데이터 전송량(트래픽) 분산 등의 세부내용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 의결을 거쳐 별도 안내됩니다. 본 안내서에는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(개요)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우편투표의 경우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에서 일괄 사무를 처리하므로 안내를 생략합니다.

# 모바일투표



## ● 투표 방법

민주노총이 보낸 모바일 메시지 속 인터넷주소(URL)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뒤 기표

## ● 모바일 메시지 발송 횟수

전체 7일 간 매일 1회 발송원칙 (단, 투표 완료자는 다음 회 차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자동제외)

※ 2G폰이나 인터넷 차단 스마트폰 사용자는 모바일투표 불가

※ 모바일 메시지 발송 비용은 민주노총이 부담



### > 대(對) 선거인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

- 전체 7일 동안 1일 1회 08시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단, 산별노조(연맹)의 사전 요청으로 산별노조(연맹)별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.
-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필요 시 하루 2~3회 모바일 메시지 발송도 가능합니다.



### > 모바일투표 전(前) 본인인증

-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의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선거인마다 각기 모두 다른 URL(인터넷주소)이 발송됩니다.
- 단, 전체 선거일 7일 동안 보내지는 각 선거인 별 URL(인터넷주소)은 동일합니다.
- 모바일 메시지를 수신받은 선거인이 모바일 메시지 내용 속 URL(인터넷주소)에 접속한 뒤 [인증요청] 버튼을 누르면, 4자리 숫자 인증번호가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됩니다.
- 모바일 메시지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본인인증 페이지의 인증번호칸에 입력하면 투표창이 열립니다.



### > 모바일투표 유효시간

- 매일 24시(자정)부터 새벽 04시 사이에는 투표를 할 수 없고, 그 외에는 어느 때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위 본인인증이 끝난 뒤에는 30분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합니다. 만일 30분 내 투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,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


### > 모바일투표 도중 중단하였을 경우

-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를 시작했으나 투표 도중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창을 닫고 나갈 경우,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
- 다시 본인인증을 거치면 기존에 진행중이던 투표에 이어서 재개됩니다.
- 투표 중단 후 투표 종료일까지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투표 중단 전 완료한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되나 완료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.



### > '선택하지 않음' 기표 가능

- 민주노총 임원, 지역본부 임원 등 각 선거 문항에는 '선택하지 않음'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.
- '선택하지 않음'에 기표하고 투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.

# ARS투표



## ● 투표방법

안내 전화를 받아 그 안내에 따라 기표 (안내전화 받지 않을 시 당일 추가 1회 전화)

## ● 안내전화 발신햇수

전체 7일 간 매일 1회 발송 원칙 (단, 투표 완료자는 다음 회차 안내전화 시 자동 제외)

※ 안내 전화비는 민주노총이 부담



### ▶ 대(對) 선거인 안내전화 발신 시간

- 전체 7일 동안 1일 1회 09시부터 순차적 안내전화 발신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안내전화 미수신 시 당일 중 안내전화가 재발신됩니다.
- 단, 산별노조(연맹)의 사전 요청으로 산별노조(연맹)별 안내전화 발신시간을 매일 달리할 수 있습니다.
-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필요 시 하루 1회 추가 안내전화 발신도 가능합니다.



### ▶ ARS투표 전(前) 본인인증

- ARS 전화 안내에 따른 숫자 4자리를 누르면 본인인증으로 갈음합니다.
- 그 뒤 음성 안내에 따라 기표행위를 하면 됩니다.



### ▶ 투표통화 도중 중단되었을 경우

- 투표통화 도중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를 끊었을 경우에는 다음날에 투표해야 합니다.
- 다음 날 미투표자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전화를 수신하게 될 것이며, 이 때 기존에 진행중이던 투표에 이어서 투표가 재개됩니다.



### ▶ '선택하지 않음' 기표 가능

- 민주노총 임원, 지역본부 임원 등 각 선거 문항에는 '선택하지 않음'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.
- '선택하지 않음'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.

# 이메일투표



## ● 대상제한

해외근무자와 전자투표 시행 단위조직(투표구)의 휴대전화 미소지자에 한함

## ● 투표방법

민주노총이 보낸 이메일(총 3회)에 포함된 인터넷주소(URL)에 접속 및 본인인증 후 1시간 내 기표



### > 대 선거인 이메일 발송횟수

- 전체 7일 동안 3회 이메일을 발송할 것이며, 발송일은 민주노총 중앙선거위가 정합니다.



### > 이메일투표의 본인인증

- 각 선거인이 수신한 이메일의 URL(이메일주소)을 클릭하여 투표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- 투표페이지의 [인증메일받기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즉시 '인증이메일'이 추가 발송되며, 그 이메일을 30분 내에 열어 [인증확인] 버튼을 클릭하면, 이전 기존 투표페이지를 통해 투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

### > '선택하지 않음' 기표 가능

- 민주노총 임원, 지역본부 임원 등 각 선거 문항에는 '선택하지 않음'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.
- '선택하지 않음'에 기표하고 투표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.



# 전자투표 공통사항

- 전자투표 일일투표율 공개 등
-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

## 01 전자투표 일일투표율 공개 등

### 민주노총

①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는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전자투표 일일 투표율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 의결을 통해 전체 또는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별로 외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.

### 산별노조 (연맹), 지역본부, 민주노총

② 산별노조(연맹)와 지역본부는 어느 조직이든 서면\_서식61호 으로 전체 투표소, 혹은 특정 투표소에 대한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목록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에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 
③ 위 요청을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는 의결을 거쳐 요청한 조직(산별노조(연맹) 또는 지역본부)에 해당 명단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 
단, 위 명단목록 제공 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들에게도 동시에 제공됩니다.

## 02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③

### 단위조직, 산별노조 (연맹), 민주노총

선거인명부 확정(10.25) 이후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조합원이 선거일 기간에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조직은 산별노조(연맹)에 서식\_서식64호 대로 보고해야 합니다.  
위 보고를 받은 산별노조(연맹)는 즉시 서식\_서식65호대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.  
위 통지를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는 즉시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자를 직접 재적에서 제외합니다.

# 현장·전자 합계 투표율

- 현장투표 · 전자투표 합계 투표율 공개 등



## 01 현장투표·전자투표 합계 투표율 공개 등

### 민주노총

- ①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의결을 통해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현장투표 · 전자투표 합계 투표율을 전체 또는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별로 외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.
- ② 민주노총 중앙선거위는 의결을 통해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현장투표 · 전자투표 합계 투표율을 산별노조의 지역별, 지역본부 내 가맹조직별, 전체 단위조직(투표구) 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투표율 집계시스템을 산별노조(연맹) 및 지역본부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.

### 산별노조 (연맹), 지역본부

- ③ 민주노총 중앙선거위의 의결에 따라 투표율 집계시스템이 개방되면 사전에 부여받은 투표율 조회용 계정을 이용하여 집계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. 산별노조의 지역별, 지역본부 내 가맹조직별, 전체 단위조직(투표구) 별로 투표율을 조회하고 투표율이 저조한 단위조직(투표구)를 확인하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.